제1주제

방송통신 결합판매와 사후규제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2016. 12. 28. 변호사 박 준 용



01 결합판매 규제의 배경

0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규제

03 공정경쟁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규제

04 결어



결합판매 규제의 배경



결합판매 규제의 배경

결합판매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

결합판매의 확대

• 통신결합상품 가입자: '07년 176만에서 '14년 1,262만 가구로 비약적 증가

(단위: 계약건수 만건)

							(- 11 11. 1	_ , ,
구분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통신사업자 ¹⁾	176	388	688	897	1,043	1,140	1,187	1,262
	(57.0%)	(62.2%)	(71.4%)	(74.3%)	(82.6%)	(82.2%)	(81.7%)	(81.9%)
방송사업자 ²⁾	133	236	275	310	219	247	265	279
	(43.0%)	(37.8%)	(28.6%)	(25.7%)	(17.4%)	(17.8%)	(18.3%)	(18.1%)
계	309	624	963	1207	1,262	1,387	1,452	1,541
가구대비 보급률 (가구수)	18.7% (1,654)	37.2% (1,679)	56.5% (1,705)	69.5% (1,736)	71.3% (1,769)	77.3% (1,795)	80.0% (1,821)	83.5% (1,846)
주민등록세대 대비 보급률 (세대수)	16.5% (1,869)	32.8% (1,901)	50.0% (1,926)	60.7% (1,987)	63.0% (2,003)	68.6% (2,021)	71.2% (2,046)	74.4% (2,072)

(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)

• '09년 이후 통신 계열사 간 M&A로 유무선 통합사업자 경쟁 구도가 확립됨에 따라 이동전화를 포함한 QPS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



결합판매 규제의 배경

결합판매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/ 관련 규정

결합판매 확대 및 경쟁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

- '공짜', '무료' 광고 등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는 방식의 마케팅 기법 활용
- 경품 제공 등의 방식에 의한 과열 경쟁
- 결합판매에 의한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

관련 규정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 제1항 제5호 "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 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"
-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바목 "(결합판매에 의하여)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"
-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(방송통신위원회 고시, "결합판매 고시")

결합판매 규제의 배경

관련 규제법령의 구조

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

- 이용자의 informed decision /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
- 종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던 정책을 2012년 고시에 반영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

-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
- 약관 인가 방식에 의한 사전 규제와 금지행위 규정에 의한 사후 규제가 병존

※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

 시행령 별표 4 "결합판매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"

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

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의 내용

결합판매 고시 제3조 제1항

결합판매 소매의 과정을 가입단계 / 이용단계 / 해지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자
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

가입단계 (제1호) - 이용자의 informed decision 보장

- 허위·과장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치행위 금지 (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·다량할인·결합할인 등 구분표시 의무화)
-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
-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 부과 (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부과)
 - ✓ 관련 판례(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7688 판결;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1가합7340 판결 등) "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"

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의 내용

이용단계 (제2호)

- 이용 중 새로운 서비스 추가, 이용자에 불리한 계약 내용 변경시 이용자의 서면 동의 요구
-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품질기준 유지의무 부과
- 잔여 약정기간 통지 / 약정 자동연장시 위약금 미부과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

해지단계 (제3호)

-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 일부 이용 불능시 결합상품 전체를 해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의 선택권 인정
-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의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금지 / 해지 처리 지연 금지
- 계약 후 1년 경과시 경품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금지 (이용자의 귀책사유 불문)

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

허위-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

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

- '15. 10. 방통위 제정, 발표
-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'최대', '최고', '제일'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
- 특정 구성상품의 요금을 '공짜', '무료' 및 '0원' 등으로 표현
- 기간 다량 결합할인 구분 없이 전체 할인금액만을 표시
-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

허위-과장광고 관련 사례

(허위광고)

-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사용 (예: '최대', '최고', '제일' 등)
-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허위로 표기 (예: '인터넷 공짜', '무료', '0원' 등)

(과장광고)

- 기간 다량 결합할인 등의 구분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한 경우
-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한 경우
-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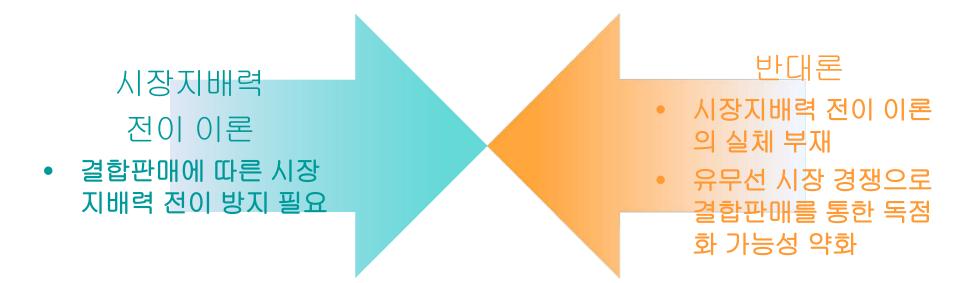


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

- 이용자 🗆 🗆 🗆 🗆 🗆 🗆 🗆 🗆
-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라는 강력한 명분 / 관련 쟁점 다수의 제재 사례
- 어느 정도의 '포장'이 필수적인 마케팅 내지 광고, 영업행위의 속성과의 관계
 - 실무상 내지 운용상 감안되어야 할 사항
- 표시광고법 및 약관규제법상 일반 규제와의 관계
 - 광고 관련 사항은 표시광고법과 중복될 여지
 - 설명의무, 계약서 교부의무, 위약금 제한 등은 약관규제법과 중복될 여지
 - 결합판매 고시상 특유의 문제를 구체화한 측면
 - ▶ 일반 규제기관과 전문 규제기관 간의 관할 문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 

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및 결합판매 고시 제3조 제2항)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시 "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 효과"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규제

이용약관 인가를 통한 사전 규제 (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)

-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(독점요금) / 인하(약탈적 가격)에 의한 이용자 후생 저해 / 경쟁제한 행위 방지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규제인 관계로, 유료방송 및 IPTV 이용약관에 대해 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

결합판매 약관 심사지침

- 요금적정성, 비용절감, 이용자편익 증대 효과 및 동등결합판매 여부 심사
- (요금적정성) 지배적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저가 요금(원가 이하) 책정시 불인가
- (심사간소화 기준) 결합할인율이 결합상품 전체의 30% 이하, 인가역무 요금 할인율이 30%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
 - ✓ '07년 10%, '08년 20%, '09년 30% 로 점차 규제 완화

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(순수결합판매)

순수결합판매 규제

- 결합판매의 종류
 - ✓ 순수결합판매: 개별 상품 각각 구매는 불가능하고 결합으로만 가능
 - ✓ 혼합결합판매: 단품 및 결합으로 모두 구매 가능
 - ✓ 끼워팔기(tying): 개별 상품 중 특정 상품을 결합이 아닌 별도로 구매 불가능
- 판례상 끼워팔기의 개념: "주된 상품의 공급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종된 상품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" (대법원 2006. 9. 8. 선고, 2004두3014 판결)
-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(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)
- 순수결합판매 / 끼워팔기(tying) 모두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(할인율 규제)

할인율 규제

-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'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':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(제조원가, 매입원 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)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인정

취지

- '15.8. 발표한 빵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(안)」에 대한 후속조치 / 공정경 쟁 촉진을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임을 명시
- 부당염매 또는 약탈적 가격 설정(predatory pricing) 규제와 유사한 취지로 이해
- 인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약관 인가를 통한 사전 규제의 보완적 성격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(동등결합판매)

관련 개념

- 동등결합판매: "인가사업자가 직·간접 제공하는 결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한 타 사업자 제공 결합판매"
-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: "인가사업자 외의 타 사업자가 개발, 구축 이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 서비스로서 동등결합판매에 필수적인 것"

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

- 인가사업자의 필수요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공 / 제공 중단
- 인가사업자의 필수요소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 (자사와 타사간 / 타사간)
- 인가사업자가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타 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 거래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결합판매 (타 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 저해)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(동등결합판매)

방통위 동등결합판매 가이드라인(안)

- 동등결합 제공시 자신/계열사/타 사업자에 비해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후 검증: 일정 기간 경과 후, 제공 조건을 재협상, 조정할 수 있음 (先동등조건 제공, 後검증)
- 제공 절차: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,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

관련 쟁점

- (동등할인 문제)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의 할인율이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도록 제한 ('15. 8. 방통위 결합판매 제도개선안 발표시제외)
- 제도 시행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의 고려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 존재
 - ✓ 결합판매 고시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,제도 시행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

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(경품 규제)

근거 법령

•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규정

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기준

-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한 1인당 예상 이익 수준을 초과하는 경품 및 부당한 요 금감면은 위법(이용자 차별)
 - ✓ DPS(초고속인터넷 + VoIP/IPTV)의 경우 22만(=19만+3만) 원
 - ✓ TPS(초고속인터넷 + VoIP + IPTV)의 경우 25만(=19만+3만+3만) 원
 - ✓ VoIP, IPTV 등 시장형성 초기 서비스의 경우 1인당 매출액의 20% 를 기준으로 산정 (서비스 적자 상태,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 감안)
- (이유) 서비스 전체로는 흑자이더라도 경품 또는 요금감면을 받은 특정 이용 자에게서 적자 발생시 다른 이용자가 해당 특정 이용자를 보조하거나 보조할 우려가 있다는 점



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/사후규제

	공정경쟁 □					
--	--------	--	--	--	--	--

관련 쟁점

- 규제의 목적이 이용자 차별 해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의 일반적인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에 한계
- 규제 기준의 renewal 필요성
 - ✓ '16. 12. 통신 4사와 5개 MSO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

결어

방통위 사후규제 수단의 의의

 공정위의 혼합결합 심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요한 경쟁정책적 의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



THANK YOU

www.bkl.co.kr

